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이 수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1.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다음의 물품 중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물품

가산세 부과대상
1.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2.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목차 2. 할당관세품목 참고)

2.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가산세율

기준	가산세율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 ~ 2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1.0%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1.5%
이외의 경우	과세가격의 2.0%

II.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고등어	중량이 300 그램을 초과하고 600 그램 이하인 것	0303.54-0000	2022.11.10.~2023.03.31.
바나나	기타	0803.90-0000	2022.11.10.~2022.12.31.
파인애플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4.30-0000	
망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4.50-2000	
닭	기타 (중량이 185 그램 이하인 것)	0105.11-9000	2022.11.10.~2023.06.30.

계란	부화용 수정란	0407.11-0000	2022.11.10.~2023.06.30.
	신선 계란	0407.21-0000	
	건조한 계란 (노른자위)	0408.11-0000	
	기타 계란 (노른자위)	0408.19-0000	
	기타 건조한 계란	0408.91-0000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0408.99-1000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3502.11-0000	
	식품 원료용 액체·냉동상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3502.19-0000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정 공고(관세청공고 제2022-129호)

| Contact



김승옥 관세사

T 02-6011-3046
E sokim@esein.co.kr



성단샘 관세사

T 02-6011-3021
E dsseong@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